

회비규정

제 정: 2019.09.16.(이사회 승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 정관에 명시된 회비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회비는 정관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제3조(회비)

- ① 회비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며,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특급	준특급	A급	B급
입회비	10,000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연회비	50,000원	20,000원	2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 ② 종신회비는 750,000원이며, 1회 납부 이후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없으며,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④ 위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입회비,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면제 사유를 이사회 회의록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반환)

- ① 신입회원은 회비납부 완료 후 10일 이내 회원가입을 취소할 경우에 한하여, 회비를 반환하며, 10일 초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회비 납부 후 학술행사 등록회비 등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② 기존 회원의 회비는 납부 후 10일 이내 탈퇴를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회비를 반환하며, 10일 초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회비 납부 후 학술행사 등록회비 등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제5조(납부방법) 회비의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현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포함)
② 신용카드 ③ 지로 ④ 기타 사무국에서 인정하는 납부 방식

제6조(기한) 회비의 기한은 1년이며, 그 시점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 상 모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단,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사무국은 총무이사(재무담당)의 확인을 받아, 선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부칙 (2019.9.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